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84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동식, 유 용, 김상훈,
김태수, 김용연, 김소양, 이정인,
채유미, 김제리, 오한아, 김혜련,
이영실, 서윤기, 오현정, 봉양순,
김화숙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낙인감과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이용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선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또한, 노후화된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안 제5조)
- 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센터”를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센터에서”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u>지역아동센터</u> (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지역아동센터</u>----- ----- ----- -----.</p>
<p>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u>센터</u>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책임) ----- ----- ----- ----- <u>지역아동센터</u>----- ----- -----.</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u>센터</u>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4.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지역아동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 ----- -----.</p> <p>4. (현행과 같음)</p>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3.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

----- 센터 -----
-----.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

-----.

1. ~ 3. (생략)

<신설>

4.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5. (현행 제4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4호를 신설함에 따라 기능보강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센터 기능보강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기능보강 가능)시설에 대한 현황이 없어 정확한 비용추계 곤란
- * 같은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책임), 제3조(용어의 정의)제3호, 제4조(사업실행 주체)의 개정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제5조(이용의 대상)를 개정하는 것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보건 복지부 사업지침)에 이미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이 개정 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에 제4호를 신설하는 것에서 ‘센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경우 해당 사업이 기 추진중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참고> 2019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사업대상 : '18.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대상인 시설로서 노후화 등으로 내부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 사업내용 :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도배, 장판, 마루, 조명, 주방, 화장실 개보수 등)
 - 지원단가 :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시설 198,150원/㎡(최대3천만원)
 - 개인 및 일반단체 등 66,050원/㎡(최대1천만원)
- 소요예산 : 2,310,000천원(국비30%, 시비 7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요양, 양로 등), 아동복지(양육) 시설 등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의 사업 범주에 증축, 개축, 신축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에어컨 컴퓨터 등의 장비보강도 포함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비 지원사업(기 추진사업)은 도배, 장판, 마루, 조명, 주방, 화장실 개보수 등 단순 개보수만 지원하고 있으며 신·증·개축 포함하여 대수선 등 구조 변경 및 가구, 에어컨, 컴퓨터 등의 장비보강은 지원하지 않음. 신·증·개축 등을 포함하여 대수선 등 구조변경하는 기능보강의 경우 시설운영주체(법인 등)소유 건물이어야 가능하나 관련 현황이 없어 추계 곤란

※ 다만,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19.1기준 434개소) 중 다수가 임차일 것으로 추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